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도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37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 안도걸·조인철·정태호

차규근・정진욱・김영환

김현정 · 최기상 · 양부남

김영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·증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·감독이 필요하나, 상속·증여 시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인프라가 미비해 가상자산이전 거래에 대한 정밀한 세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.

## 주요내용

가상자산이전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부여 및 제출방법 등 규정하고,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가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가상자산지갑 외의 가상자산지갑(개인지갑등)에 대한 정보(지갑주소, 보유내역)를 매년 신고하도록함(안 제82조제8항, 제82조의2 및 제87조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상속 세 및 증여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2조의2(가상자산지갑의 신고 등) ①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(이하 "가상자산"이라 한다)을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가상자산지갑(가상자산을 보관·이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수 있게 지갑의 개인키, 공개키,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한다. 이하 "가상자산지갑"이라 한다)의 잔액(가상자산지갑이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가상자산지갑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

- (이하 "지갑신고의무자"라 한다)는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지갑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3 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가상자 산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상자산지갑
- 2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확인 되는 가상자산지갑
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(이하 "가상자산지갑정보"라 한다)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지갑신고의무자는 세무서장등이 제8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가상자산지갑정보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할 수 있다.
- 1.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
- 2. 지갑주소, 가상자산의 종류, 매월 말일의 보유지갑 잔액의 최고금 액 등 보유지갑에 관한 정보
- 3. 가상자산지갑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지갑 등 그 지갑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에 관한 정보

제8장(제87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8장 벌칙

- 제87조(가상자산지갑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) ① 제82조의 2제1항에 따라 지갑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상자산지갑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: 미신고 금액
  - 2. 과소 신고한 경우: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 장등이 부과·징수한다.
  - ③ 「조세범 처벌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「조세범 처벌절차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82조제8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가상자산지갑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2조의2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2조(지급명세서 등의 제출) ①	제82조(지급명세서 등의 제출) ①
~ ⑦ (생 략)	~ ⑦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⑧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
	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
	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
	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
	래내역 등 상속세 및 증여세
	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
	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
	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
	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
	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제82조의2(가상자산지갑의 신고
	등) ①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
	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
	호에 따른 가상자산(이하 "가
	<u> 상자산"이라 한다)을 보유한</u>
	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
	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
	루의 가상자산지갑(가상자산을
	보관・이전하기 위한 소프트웨
	어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을

통하여 가상자산을 주고 받을 수 있게 지갑의 개인키, 공개 키,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소프 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한다. 이 하 "가상자산지갑"이라 한다)의 잔액(가상자산지갑이 여러 개 인 경우에는 각 가상자산지갑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자(이하 "지갑신고의무자" 라 한다)는 제2항에 따른 가상 자산지갑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- 1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 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 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관 리하는 가상자산지갑
- 2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률」 제5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확인되는 가상자산지갑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(이하 "가상자산지 갑정보"라 한다)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지갑 신고의무자는 세무서장등이 제8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가상자산지갑정보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.

- 1. 보유자의 성명·주소 등 신 원에 관한 정보
- 2. 지갑주소, 가상자산의 종류, 매월 말일의 보유지갑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지갑에 관한 정보
- 3. 가상자산지갑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지갑 등 그 지 갑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 제8장 벌칙

<u>제87조(가상자산지갑</u>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) ①

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갑신 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가상 자산지갑정보를 신고하지 아니 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 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: 미신 고 금액
- 2. 과소 신고한 경우: 실제 신

   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

   금액과의 차액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부과·징수한다.
- ③ 「조세범 처벌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「조 세범 처벌절차법」 제15조제1 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